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구조혁신 관계장관회의
26-25-3 (공개)

국가자산 관리체계 대전환 (K-Asset 혁신 프로젝트) 추진방향

2026. 8. 6.

관 계 부 처 합 동

국가자산 관리체계 대전환(K-Asset 혁신 프로젝트) 추진방향 [요약]

1. 추진배경

- 국유재산 규모가 최근 비약적으로 확대되며 1,400조원을 돌파*, 지식재산**·가상자산 등 신규 자산군도 등장하며 포트폴리오 다변화

* 연도별 국유재산 현황(조원, 기말기준): ('01) 188.3 → ('20) 1,157.5 ('25) 1,402.7

** '12년에 '지식재산'이라는 단일 개념으로 특허권, 저작권, 상표권,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등 개별 권리를 최초 포섭

- 반면, 현행 국유재산법은 1950년 제정 당시의 부동산 중심 기본 틀이 유지되며 자산별 특성을 반영한 관리에 한계

⇒ 국부창출 극대화를 위해 거대·다변화된 국가자산을 온전히 담아낼 수 있는 관리체계 재설계 시급

2. 추진방향: ^[1]법·제도 개편 + ^[2]DB 시스템 구축

[1] 국가자산기본법 제정(기존 국유재산법 전면 개정)

- 국가자산의 범주·관리 확대 및 자산군별 맞춤형 규율체계 정립

① (개념 재정립) 소유·보존 중심의 법적 개념(국유재산)을 적극적 운용·가치창출 중심의 경제적 개념(국가자산)으로 패러다임 전환

- 소극적 관리 위주의 現 부동산 중심 체계를 극복하고, 他 유형 자산(동산 등) 및 금융·지식·가상자산까지 포괄하는 통합 법적기반 마련

② (통합 관리체계 구축) 총괄청의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각 부처의 전문기관(캠코) 위탁범위 확대 등 총괄 조정·관리기능 강화

③ (맞춤형 체계 구축) 물리적·경제적 특성상 맞춤형 관리가 필수적인 핵심 자산군별* 별도 장(章) 신설

* 부동산(토지, 건물) / 지식재산 / 증권·출자 / 가상자산

- 자산별 주 주기(취득-관리-처분)에 최적화된 독립 규율체계 확립

- 국가자산 가치 극대화·총괄관리 강화를 위한 전문 거버넌스 구축

① (국가자산관리위원회 신설) 공공·민간 전문가가 참여하여 국가자산 종합계획 수립, 자산운영 기본방향, 특례 적정성 등 심의·결정

- ② (특례 관리 원칙 정립) 기본법 취지에 부합하도록 특례 허용 원칙을 엄격히 명시하는 등 특례 사전·사후 통제 강화
- ③ (평가·환류 체계 마련) 통합 관리체계 하에서 자산 운용·활용 성과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운영방향 등에 환류
- ④ (기금 운용 확대) 국가자산의 포괄 범위 확대에 대응하여, 現 국유 기금의 기능 재정립 및 수입·지출구조 개편 등 발전방향 모색
- ⑤ (전문 집행기관 활용: 캠프) 국가자산 관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전담 집행기관의 역량을 육성하고, 세부 업무 집행 뒷받침
 - * 국유재산 관련 캠프의 기능 및 역할 개편 등도 전반적으로 검토 예정

(2) DB 등 시스템·프로세스 구축

□ 범 국가자산 DB 구축 및 AI 활용 단계적 추진

- ① (1단계) 국가·지방정부·공공기관 보유 자산정보를 dBrain 으로 연계·데이터화하는 한편, AI 기반 업무지원 기능 마련(연내)
- ② (2단계) 자산의 적극 활용·개발을 위해 AI 기반의 국가자산 전용 DB(가칭 K-Asset Cloud)를 신규로 구축('27년중 ISP 수립 예정)

□ 중기개발계획(신설) 연계를 통한 수요·공급 효율적 매칭 실시

- 관계기관간 활용 수요 매칭 등을 위해 매년 실시하는 자산 관리 정기 프로세스* 마련

* 자산분류(1~2월) → 활용계획 조사(1~3월) → 활용방안 결정(4~7월) → 사업구체화(8~12월)

3. 향후계획

□ (법·제도)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 합동 작업반*」 가동 + KDI가 총괄 연구기관으로서 법령안 초안 마련(연내목표)

* 총괄반 + 핵심 자산군별(부동산, 지식재산, 증권·출자, 가상자산) 작업반 운영

□ (시스템) dBrain에 지방정부, 공공기관 자산정보 연계 및 유권 해석 등 지원 위해 행정망 內 AI 챗봇 도입(~'26.12월)

※ DB 신규 구축·AI 고도화를 위해 '27년부터 ISP 등 착수

국가자산 관리체계 대전환을 통한 국부창출

K-Asset 프로젝트

“지키는 자산” → “키우는 자산”

거버넌스 재편

국가자산 개념전환

국유재산(소유·보존)
→ 국가자산(운용·가치창출)

통합 관리체계 구축

총괄청 컨트롤타워 역할 확대
특례 사전·사후 통제 강화

국가자산관리기금 신설

現 국유재산관리기금
수입·지출구조 확대 편

국가자산관리위원회 신설

부처·민간 전문가 참여 확대
분과위 신설(지식재산/가상자산)

국가자산책임관 임명

중앙관서별 소관자산 현황파악
및 법률준수 총괄책임 부여

전문집행기관 역할 강화

국가자산관리위원회 뒷받침
중앙관서 → 캠프 위탁범위 확대

자산군별 관리 고도화

부동산

산재된 개발지침 일원화
공동개발 및 수요-공급 매칭

지식재산

정당한 가치평가 방법 고안
IP 은행^{가치} 신설 통한 통합관리

금융재산(증권·출자)

취득~처분 쉼 주기 통합관리
주주권 행사·처분 기준 통일

가상자산

국가자산 관리대상 명문화
처분(매각)기준 명확화

데이터

· 시스템 구축

dBrain 연계 확대^{1단계}

중앙정부-지방정부-공공기관
유기적 공동개발 및 활용 촉진

K-Asset Cloud 구축^{2단계}

AI 기반 유희자산 발굴 및
수요·공급 최적 매칭

순 서

1. 추진배경	1
2. 현행 체계의 문제점	2
(1) 법·제도	2
(2) 데이터·시스템	3
3. 추진방향	4
(1) 국가자산기본법 제정	4
(2) 전용 DB 구축·고도화	7
4. 향후계획	9

1. 추진배경

□ (재정운용 패러다임 전환) 자산의 효율적 관리 중요성 ↑

- 전세계적으로 자산의 단순 유지·보존에서 적극적인 가치극대화를 통해 재정 기반을 확대하는 전략 확산 中

※ <Unlocking Public Wealth> (IMF, Finance & Development, Dag Detter, 2018)

“정부(전세계)가 보유한 공공자산이 세계 GDP 규모에 육박하나 체계적 관리 부족 → 관리제고만으로도 재정기반 대폭 확대 可 (수익률 3% 개선시 약 2.7조 달러 추가 창출)”

- 우리나라의 국유재산 규모도 최근 비약적으로 확대되어 1,400조원을 돌파* → 양적 팽창에 걸맞는 관리체계 필요성 증대

* 연도별 국유재산 현황(조원, 기말기준, 월간 재정동향):

(‘01) 188.3 (‘05) 264.4 (‘10) 317.5 (‘15) 990.2 (‘20) 1,157.5 (‘25) 1,402.7 [참고1]

- 특허권 등 지식재산*과 함께 가상자산 등 신규 자산군도 지속 등장하며 국가자산의 포트폴리오도 다변화되는 추세

* ‘12년에 ‘지식재산’이라는 단일 개념으로 특허권, 저작권, 상표권,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등 개별 권리를 최초 포섭 [참고2]

□ (구조적 괴리) 1950년에 제정된 「국유재산법」 체계의 한계

- 現 국유재산법은 70년 전 관리체계의 기본 틀 유지* → 국유재산 대부분이 부동산임을 전제로 한 재산 관리체계**로 발전

* 국유재산법은 1950.4.8일 “법률 제122호”로 최초 제정 + 두 차례(‘76, ‘09) 전면개정

** 현행 행정재산(처분불가, 사용허가만 가능) / 일반재산(처분·대부가능)의 이분법적 분류 체계는 토지·건물 등 부동산의 물리적 점유와 관리를 전제로 설계

- 금융·지식 등 성격이 상이한 자산군에도 부동산 중심의 관리원리(행정/일반재산)를 획일적으로 적용* (가상자산은 규정 無)

* 국유재산법 총 111개 조문 중 행정·일반재산은 40개(제27조~제59조의5), 현물출자 6개(제60조~제65조), 정부배당 5개(제65조의2~제65조의6), 지식재산 6개(제65조의7~12) 등

- 특례 통제를 위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도 사용료 감면, 양여, 사용기간 확대 등 실질적으로 부동산 중심으로 운영중

👉 국부창출 극대화를 위해 거대·다변화된 국가 자산을 온전히 담아낼 수 있는 국가자산 관리체계 재설계 시급

2. 현행 체계의 문제점

(1) 법·제도

□ 국가자산 전반의 관리가 분절적이며, 총괄 조정 기능도 취약

- 중앙정부 내에서도 일반·특별회계 및 기금별로 자산 관리가 분절되어 있어, 총괄청(재경부)의 통합적 조정·통제에 한계

* (일반회계) 일반재산은 총괄청이 관리(캠코 위탁)하나, 행정재산은 각 부처가 총괄청의 사용승인을 받은 후 자체 관리 → 행정목적 상실된 자산의 용도폐지에 소극적 (특별회계·기금) 소관 중앙관서별 행정·일반재산 모두 관리·처분 → 유지 위주 관리

< 국유재산(토지·건물 기준, '25년 711조원) 일반·행정재산 분류 >

	일반회계	특별회계·기금
행정재산	각 중앙관서의 장 (555.8조원) * 총괄청 사용승인	각 중앙관서의 장 (113.1조원)
일반재산	총괄청 (38.4조원) * 캠코 위탁 등	각 중앙관서의 장 (3.7조원)

□ 부동산 중심 관리체계 → 자산유형별 불균형 및 관리 사각지대 발생

- (부동산) 대부분 규정이 부동산 중심*으로 되어 있으나, 유지·보존에 초점 → 적극적 활용 및 개발에 제약요인으로 작용

* 행정재산(사용허가, 사용료감면, 용도폐지 등), 일반재산(대부, 매각, 교환, 양여, 개발 등)

- 중앙관서별 행정재산 중심의 칸막이식 관리 등으로 인해 효율성을 높이는 복합청사 개발 등 유기적인 공동개발에 한계

※ < 해외사례: 영국 GPA (Government Property Agency, 정부재산청) >

- ▶ 중앙정부 소유 부동산을 전문적·효율적으로 통합관리하는 GPA를 신설('18)
- ▶ 흩어진 국유건물을 통합·재배치하여 임차료, 유지관리비 등 운영비용을 절감
→ '25~'26에만 2,540만 파운드 예산 절감(Annual Report and Accounts 2025/26, GPA)

- (증권·출자) 금융자산의 특성을 반영한 효율적 관리체계 부재

- 국유증권, 출자지분의 취득부터 가치평가, 배당 및 주주권 행사, 처분·회수에 이르는 금융자산 전 주기 관점의 관리 부족
- 회계·기금별 관리주체 분산에 따른 효율적 관리 한계

* [일반회계 출자지분] 총괄청(재경부) [특별회계·기금 출자지분] 부처 자율 관리
→ 자산 가치평가, 지분보유에 따른 주주권 행사 및 처분 전략 등이 부처별로 상이

- (지식재산) 방산 등 정부 R&D 확대에 국가 보유 지식재산의 활용 중요성*이 높아졌으나, 분절적 관리** 등으로 현황 파악조차 미흡

* [지식재산] 비독점·비배제적 성격으로 개방이 가능하고 활용할수록 가치 제고
 ↳ [유형재산] 독점·배제적 성격으로 전대(轉貸) 금지, 사용료 등 규정

**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지재처), 저작권(문체부), 품종보호권(농림·해수부)

- ①현행 규정은 사용허가(사용료 징수) 및 전대(재대여) 등 전통적 방식으로만 제한, ②일부 자산(상표권 등)은 사실상 관리 부재

※ < 해외사례: 영국 재무부(HM Treasury), Rose Book >

- ▶ 공공부문 지식재산(저작권, 디자인, 데이터 등) 중요성 인식 → 각 부처가 가진 지식재산을 파악하고, 이를 상업화하여 재정수익을 창출토록 범정부 지침(Rose Book, '21) 마련

- (가상자산) 민간 보유증가*로 향후 몰수·기부 등에 따른 국가 차원의 관리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현행 법령상 규율 부재**

* 국내 등록 계정수(만개): ('22말) 1,178 ('23말) 1,816 ('24말) 2,305 ('25말) 2,591

** 현재 상위 법률 없이 「정부공공기관 가상자산 보관관리 가이드라인(26.4.10 발표)」에 의존중

- (처분기준 부재) 높은 가격 변동성으로 인해 임의처분시 국고 손실 위험이 있고, 저유동성 자산 매각시 시장 교란 가능성도 존재
- (집행 정당성 부족) 민간 위탁*을 위한 국가 권한 위임, 향후 해외 소재 자산의 이관을 위한 국제 공조** 등은 명확한 법률 위임 필요

* 예) 현금화를 위한 민간 거래소 연계 / ** 예) 해외소재(거래소·지갑) 자산 환수 등

※ < 해외사례: 미국 전략 비트코인 준비금(백악관 Executive Order 14233, '25.3월) >

- ▶ '전략 비트코인 준비금 및 디지털 자산 비축'을 신설함으로써, 정부가 취득한 가상자산의 단순 매각을 지양하고, 국가 전략자산으로 관리하겠다는 방향 공표

[2] 데이터·시스템

□ 시스템상 제약 및 기관간 데이터 연계 부족으로 자산 활용 한계

- 국유재산은 자산 현황 관리 중심의 dBrain*을 통해 관리중이며, 지방정부·공공기관 자산은 데이터 연계 미흡

* 수입, 지출 등 회계처리 등에 중점, 자산활용 지원기능 등 미흡 → 8종(토지 건물 등의 대장 정보 등재 및 GIS 연계를 통해 재산별 지도, 항공사진 확인 등이 가능하도록 일부 개선

- 이로 인해, 동일한 공공부문 자산임에도 자산 현황, 활용도, 유휴 여부, 가치 변동 등 효율적·유기적 활용에 한계*

* [상호점유 현황파악 지연] dBrain-국가공간정보통합플랫폼 일일이 대조 필요
 [지방정부의 국유재산 활용 수요에 일회성 대응] 연 1~2회 중앙-지방 국유재산 정책협의회(재경부 2차관 주재, 광역 부단체장 등) 전후로만 활용 수요 파악 中

□ 자산별 상이한 평가 기준으로 인해 적시적 현황 파악에 제약

- 최초 등재시 자산가격은 취득원가 총액으로 적정하게 반영하나, 재평가 대상은 일반 유형자산 및 사회기반시설로 한정
- 부동산·금융자산은 정기적 가치 산정 체계가 작동중인 반면, 지식재산 등 신유형 자산은 임의 점검에 의존*
- * (부동산) 국유재산대장에 취득원가로 기록 → 정기조사(5년) + 개별 공시가격(매년)
(유가증권) 법상(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재평가 대상은 아님
(다만, 비상장 지분의 경우 위탁 받은 캠프에서 매년 실무적으로 재평가)
- 범정부 차원의 정확한 자산 규모 파악을 어렵게 하고, 적정 가치에 기반한 전략적 처분 등 핵심 의사결정 제약

3. 추진방향: ^[1]국가자산기본법 제정 + ^[2]전용 DB 구축·고도화

※ 現 단계에서는 제도 전환의 기본 방향과 설계 원칙을 제시

→ 세부 이행방안은 실무반 회의, 연구용역, 관계부처 협의 등 통해 구체화

(1) 국가자산기본법 제정(기존 국유재산법 전면 개정)

□ 국가 자산의 범주·관리 확대 및 자산군별 맞춤형 규율 체계 정립

- (개념 재정립) 소유·보존 중심의 법적 개념(국유재산)을 적극적 운용·가치창출 중심의 경제적 개념(국가자산)으로 패러다임 전환
- 소극적 관리 위주의 現 부동산 중심 체계를 극복하고, 他 유형 자산(동산 등) 및 금융·지식·가상자산까지 포괄하는 통합 법적기반 마련
- * (유형) 토지, 건물 등 (무형) 지식재산권, 소프트웨어 등 (금융) 채권, 주식 등
- ※ 법의 대상이 되는 자산 범위는 확대하되, 자산별 특성에 따라 직접 운용·관리 하는 대상과 현황만 관리하는 대상(단순 통계연계 등)으로 구분하여 운영
- (통합 관리체계 구축) 총괄청의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각 부처의 전문기관(캠프) 위탁범위 확대 등 총괄 조정·관리기능 강화
- 소유주체가 다른 지방정부·공공기관의 자산도 국가자산정책 협의회*(가칭) 설치 등을 통해 유기적 연계·활용 방안 논의
- * 정책방향 공유·중요사항 논의를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정부 등으로 구성

- (맞춤형 체계 구축) 공통 규율을 토대로, 물리적·경제적 특성상 맞춤형 관리가 필수적인 핵심 자산군별* 별도 장(章) 신설

* ① 부동산(토지, 건물): 711.1조원 규모 ② 지식재산: 2.3조원 규모
 ③ 증권·출자: 328.7조원 규모 ④ 가상자산: 중앙정부 보유기준 780억원 수준
 < ①~③ '25년말 기준 국유재산 현황 / ④ '26.4.6일 가상자산 가이드라인 발표 당시 기준 >

- 급변하는 자산 환경과 활용 수요에 맞춰 자산별 쏠 주기 (취득-관리-처분)에 최적화된 독립 규율 체계 확립

< 부동산 등 자산별 개선방향 >

분야	개선방향(목표 또는 예시)
부동산	▶ 유희자산의 체계적 발굴, 지방정부 등과의 공동 활용을 위한 통합적 자산 관리체계 마련 (예: 수요·공급 효율적 매칭 위한 관리 프로세스 구축 등) ▶ 산재된 現 국유재산 개발지침 일원화 등으로 개발 대상·방법 명확화
지식 재산	▶ 가치평가 방법 고안 ▶ 활용 우선 원칙을 확립(사용기간 現 최대 5년에서 대폭 확대)하고, 통합 관리방향 제시(예: 국가 IP뱅크 신설 → 쏠 지식재산 의무 등록 및 사용계약·수익배분 관리)
증권· 출자	▶ 취득부터 처분에 이르는 쏠 주기 통합관리 ▶ 주주권 행사 및 처분 전략 등의 통일을 위해 특별회계·기금의 증권 및 출자지분 관리체계 정비 (예: 통합 DB등록, 공동 실태조사 및 주주권 행사기준 수립 등)
가상 자산	▶ 법적 근거를 신설하여, 가상자산을 국가자산 관리대상으로 명문화 (기존 가이드라인 반영, 민간 위탁·연계 범위 명확화 등) ▶ 가상자산의 '처분(매각)' 절차 명확화 (예: 취득 직후 경매 원칙, 시장교란 부작용 최소화를 위한 분할 경매 등 예외적 허용)

□ 국가자산 가치 극대화·총괄 관리 강화를 위한 전문 거버넌스 구축

- (국가자산관리위원회 신설) 공공·민간 전문가가 참여하여 국가자산 종합계획 수립, 자산운영 기본방향, 특례 적정성 등 심의·결정

※ 現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부총리, 부처 차관급 8명, 민간위원: 10명)를 확대 개편
 재경·교육·국방·행안·농림·국토부 차관, 조달·산림청장 ↙ ↳ 부동산 / 기부대양여 / 증권 분과

- 중앙관서별 '국가자산책임관' 임명(現 국유재산책임관* 확대) → 소관자산 현황파악(DB 연계), 법률 준수여부에 대한 총괄책임 부여

* 국유재산의 관리·처분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중앙 관서의 고위공무원으로서 기획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는 자를 국유재산책임관으로 임명(국유재산법 제27조의2)

- **(특례 관리 원칙 정립)** 기본법 취지에 부합하도록 특례 허용 원칙을 엄격히 명시하는 등 특례 사전·사후 통제 강화
 - 특례 존치평가 제도를 내실화하여, 목적 달성여부 및 재정적 영향 등을 정기점검하고, 성과 미흡시에는 일몰
- **(평가·환류 체계 마련)** 통합 관리체계 하에서 자산 운용·활용 성과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운영방향 등에 환류
- **(기금 운용 확대)** 국가자산의 포괄 범위 확대에 대응하여, 現 국유 기금의 기능 재정립 및 수입·지출구조 개편 등 발전방향 모색

※ **국유재산관리기금 (국유재산법 제26조의2~7)**

- ▶ [운용주체] 총괄청(재정경제부 장관) (※ 캠프(한국자산관리공사)에 개발 등 위탁)
- ▶ [운용규모] '26년 기준 36,685억원 ('25년 대비 5.3% 증가)
- ▶ [운용형태] <수입> 국유재산 매각대·대여료 등 자체수입, 공자기금 예탁원금 회수 등
<지출> 청·관사 등 공용재산취득사업, 비축토지 매입 등

- **(전문 집행기관 활용: 캠프)** 국가자산 관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전담 집행기관의 역량을 육성하고, 세부 업무 집행 뒷받침
 - * 국유재산 관련 캠프의 기능 및 역할 개편 등도 전반적으로 검토 예정
- 위원회 심의·의결 사항 집행을 강화하고, 국가자산 위탁 운용 범위 확대, 관리·처분권 이관 및 일원화 등 역할 강화방안 검토

※ **해외 주요국은 전담기관의 위탁 권한 고도화 및 관리·처분권 일원화 추세**

- ▶ **(캐나다)** 연방토지공사(Canada Lands Company, CLC)가 정부의 유휴 부동산 직접 인수
 - 계획수립·용도변경·인허가 등을 직접 수립하여, 자산가치를 극대화하고, 민간에 매각하는 전문 디벨로퍼 역할 수행
- ▶ **(프랑스)** 기존 부동산 관리 기관(AGILE)을 산업·상업적 성격의 공공기관(EPIC)인 '국가 부동산 공사(Foncière de l'État)'로 전환('국가 부동산 관리 현대화 법안'('26.7.21일 하원 통과))
 - 부처별 국유자산 소유권을 전담 공기업으로 전면 이전하고, 각 부처에 임대료를 부과하는 유상사용 모델 도입 추진(~'27.1.1일까지 완료 예정)

[2] 자산 활용 제고를 위한 전용 DB 구축·고도화

□ (인프라 구축) 범 국가자산 DB 구축 + AI 활용 단계적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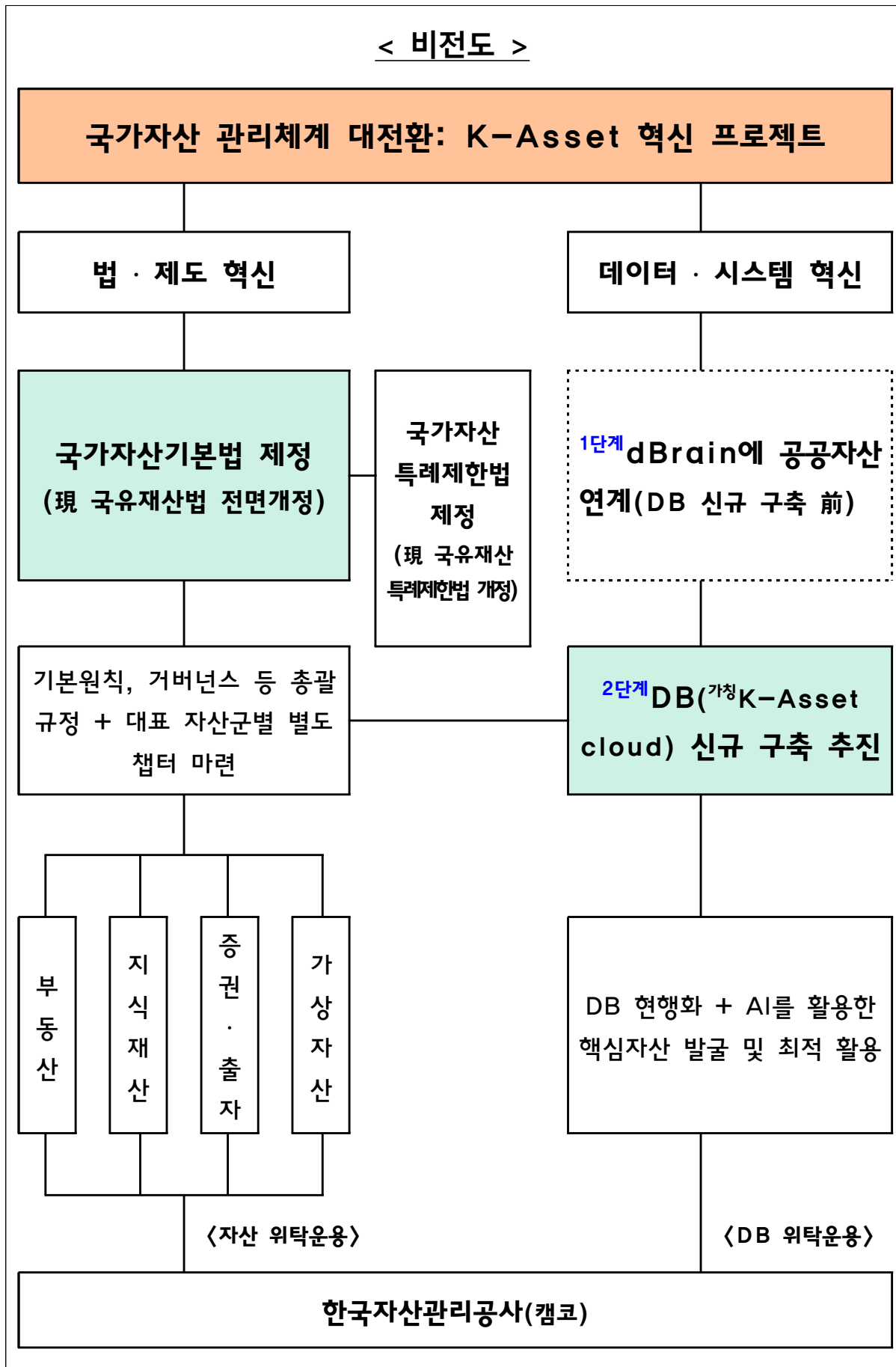
- (1단계) 국가·지방정부·공공기관이 보유한 자산 정보를 dBrain으로 연계하는 한편, AI 기반 업무지원 기능 마련(연내)
 - (DB 연계·현행화) **지방정부** 국가공간정보통합플랫폼 및 **공공기관** 알리오 플러스를 dBrain과 연계 + 국유재산 조사 연례화(現 5년주기)
 - (AI 지원) 행정망 內 AI 챗봇을 활용하여 법률해석 등 지원
- (2단계) 자산의 적극 활용·개발을 위해 AI 기반의 국가자산 전용 DB(^{가칭}K-Asset Cloud)를 신규로 구축('27년중 ISP 수립 예정)
 - ※ 국가자산 전용 DB를 구축하되, 자산별 소관체계가 상이한 점을 고려하여 공유재산 통합관리시스템(행안부, '29년) 등과 표준화된 연계체계 마련
 - AI 시스템을 고도화하여 부동산 정보, 법적 규제 등 분석 → 핵심 자산 발굴 및 최적 활용 용도 모색

※ 자산간 유기적 연계를 위해 총괄청이 지방정부나 공공기관으로부터 자산 관련 데이터, 사업계획 등 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국가자산기본법 내 법적 근거 마련

□ (수급관리 체계화) 중기개발계획(신설) 연계를 통한 수요·공급 효율적 매칭

- 관계기관간 활용 수요 매칭 등을 위해 매년 실시하는 자산 관리 정기 프로세스(①→④) 마련
 - * 긴급 정책수요 등에 대응하기 위해 '수시 프로세스'도 병행
- ① (**공급** 자산분류) DB에 등록된 자산을 중심으로 개발, 활용(대부·양여·교환 등), 보존필요 여부 등 분류(1~2월)
- ② (**수요** 활용계획 조사) 위탁개발 등 사업계획*, 청·관사 개발 위한 취득계획 등 5개년(중기개발계획) 수요 조사(1~3월)
 - * 지방정부, 공공기관 소관 자산은 국가자산과 연계한 개발 등 사업계획 조사
- ③ (**매칭** 활용방안 결정) 부처·지방정부·공공기관 협의 등을 거쳐 각 수요에 맞는 후보지 검토(4~7월)
- ④ (**추진** 사업 구체화) 중기개발계획(신설예정)에 사업계획 반영 및 국유심심의(8월)를 거쳐 위탁·기금개발 등 사업방식 구체화(9~12월)

< 비전도 >



4. 향후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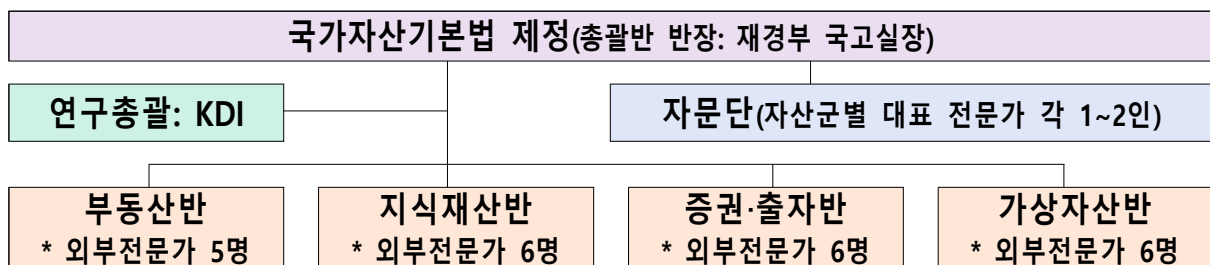
□ 민간 전문가가 폭넓게 참여하는 민·관 합동 작업반 가동(발표직후)

- (총괄반) 재경부(국고실장) 주관 하에 국가자산기본법 체계 설계, 진행상황 밀착 관리(연구용역 등) 등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
- (자산군별 작업반) 핵심 자산군별 소관 국장 및 민간 전문가를 배치하여 취득-관리-처분에 이르는 쉼 주기의 규정 마련
- (자문단) 핵심 자산군별 대표 전문가를 위촉하여 기본법에 대한 전문적 피드백 제공 및 정기적 자문위원회 추진

※ KDI가 총괄 연구기관*으로서 논의사항 조율·법령안 초안 마련

* 기본법령 및 거버넌스(안) 마련, 해외사례 조사 등 연구용역 수행('26.7.17~12.17)

< 작업반 구성(안) >



□ (기본법 마련) 작업반 논의 및 연구용역 결과 반영(연내목표)

- 작업반 논의와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국가자산의 범위·관리원칙·거버넌스 등을 반영한 기본법 초안 마련
-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주요 쟁점사항(총괄청 권한, 자산군별 특례 등)을 정리하고, 법률안 및 하위법령 초안 마련 추진

□ (시스템 구축) 자산정보 연계 및 AI 도입 단계적 추진

- dBrain에 지방정부(~'26.6월), 공공기관(~'26.12월) 자산정보 연계
- 유권해석, 사례검색 등 지원 위한 행정망 內 AI 챗봇 도입(~'26.12월)

※ DB 신규 구축·AI 고도화를 위해 '27년부터 ISP 등 착수

참고 1

연도별 국유재산 현황(조원)

	전체				
		토지	건물	유가증권	기타
2001	188.3	85.5	19.0	64.9	18.8
2002	195.5	81.1	20.5	74.5	19.4
2003	202.4	80.8	22.2	78.4	21.0
2004	217.6	81.0	24.2	86.5	25.9
2005	264.4	105.6	27.2	104.7	26.9
2006	270.1	106.6	29.0	106.8	27.6
2007	275.8	106.8	31.8	108.5	28.7
2008	309.6	107.7	35.3	131.3	35.3
2009	296.8	109.0	37.8	114.2	35.8
2010	317.5	108.5	42.5	127.4	39.1
2011	874.3	436.2	41.8	143.8	252.5
2012	892.2	435.7	47.1	143.4	265.9
2013	912.1	434.6	52.5	154.6	270.3
2014	938.5	437.5	58.0	167.0	276.0
2015	990.2	448.6	61.7	198.8	281.1
2016	1,044.4	467.0	65.2	224.3	287.8
2017	1,075.8	463.0	67.7	245.7	299.4
2018	1,081.8	467.7	69.9	241.8	302.3
2019	1,125.0	484.9	72.7	267.0	300.5
2020	1,157.5	519.6	74.5	263.8	299.5
2021	1,337.1	630.1	70.9	292.9	343.2
2022	1,369.2	629.1	72.0	315.5	352.6
2023	1,369.1	629.0	72.7	316.1	351.3
2024	1,344.5	627.8	74.0	288.9	353.8
2025	1,402.7	634.2	76.8	328.7	362.9*

* 무체재산(지식재산권 등): 2.3조원 수준 / 공작물, 기계기구, 선박, 항공기 등 기타 재산: 360.6조원

제5조(국유재산의 범위) ① 국유재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동산과 그 종물(從物)
 2. 선박, 부표(浮標), 부잔교(浮棧橋), 부선거(浮船渠) 및 항공기와 그들의 종물
 3. 「정부기업예산법」 제2조에 따른 정부기업(이하 "정부기업"이라 한다)이나 정부시설에서 사용하는 기계와 기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4.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광업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권리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이하 "증권"이라 한다)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이하 "지식재산"이라 한다)
 - 가. 「특허법」·「실용신안법」·「디자인보호법」 및 「상표법」에 따라 등록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
 - 나.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 저작인접권 및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및 그 밖에 같은 법에서 보호되는 권리로서 같은 법 제53조 및 제112조제1항에 따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권리(이하 "저작권등"이라 한다)
 - 다.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품종보호권
 -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식재산 외에 「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지식재산권. 다만, 「저작권법」에 따라 등록되지 아니한 권리는 제외한다.
- ② 제1항제3호의 기계와 기구로서 해당 기업이나 시설의 폐지와 함께 포괄적으로 용도폐지된 것은 해당 기업이나 시설이 폐지된 후에도 국유재산으로 한다.